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명시 등〉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60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명시	2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원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제30조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29조·제30조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신설></u>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 -----. <u>제29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0조(벌칙) <신 설> (생 략)	제30조(벌칙) ①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29조에 따른 공무원 의제 조항을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이와 같은 공무원 의제조항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형법 제127조를 삭제하는 대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신·구조문 비교]

구분	현 행 법		개 정 안
규율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u>직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 또는 종사하였던 자</u>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u>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u>
비밀 유지 의무	- (비밀유지의무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음)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제24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도용 금지 (안 제29조의2)
벌칙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도용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제29조, 「형법」 §127)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4조, 제30조제3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30조제1항)

□ 현재 수산공익직불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법 제26조에 따라 ①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권한은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장에게, ②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권한의 일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③직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 이수, 직불금 부정수급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는 등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²⁾.

-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권한을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직불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직불금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조사와 장부·서류의 열람,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연간 어업소득액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개정안은 해당 기관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여 직불금 수급자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 다만, 1) 개정안과 현행법과의 관계를 체계 면에서 살펴보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또는 수행했던 자는 개정안 제3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서류의 열람(제14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제14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비치의 확인

3.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4.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1. ~ 9. (생략)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벌금의 대상이 되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기존 규정(현행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형벌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2) 다음으로 현행법 제24조는 공익직불제도 관련 정보공개 및 보호에 대해 규정하면서, 개정안의 주요 적용대상인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제3자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되어 있어³⁾ ‘직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업무에 종사 또는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의 처벌 근거는 일정 부분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련된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벌칙이 규정되고 있고, 농업·임업 분야의 직불제법도 현행 「수산직불제법」과 동일한 내용 및 체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림·임업 분야 직불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⁴⁾.

3) 「수산직불제법」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처리·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문 의 처
02)6788-5422

4)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비밀누설행위 등에 대한 수산직불제법 및 농업·임업 직불제법 규정 비교 ☞ [참고자료1] 참조

참고 1

비밀누설행위 관련 수산·농업·임업 직불제법 비교

수산직불제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임업직불제법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어업인: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어업법인 및 「상법」상 회사: 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처리·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수령자: 성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법인: 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

수산직불제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임업직불제법
<u>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4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	<u>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자는 등록·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1.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산직불제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임업직불제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u>3. 제24조제2항을 위</u>	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	수행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2항 및 제19

수산직불제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임업직불제법
<u>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u>	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